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꿈꾸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 지침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양성평등위원회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꿈꾸며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꿈꾸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 지침서



발간사

성폭력 없는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제110회 총회 양성평등위원회는 지난 2019년 출판한 성평등 지침서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꿈꾸며」를 개정 증보하여 출판하였습니다.

이 지침서는 지난 2015년 출판했던 ‘성평등을 위한 교회 지침서’ 「생명 다리 이어가기」를 기초로 하여 2018년 103회 총회에서 제정하여 선포한 “성윤리 강령”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성평등 지침서 개정·증보판을 발간하는 것은 성폭력 없는 정의롭고 안전하고 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우리 교단의 중요한 결단이자 책임의 표현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성폭력 사건을 경험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직시하고, 교회 공동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방 교육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그리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피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성폭력 예방과 처리 지침을 더 구체화하고, 각 교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성윤리 강령을 다시금 되새기며,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 예방 교육의 실천 방안,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피해자 지원 체계 등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2차·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노회·총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성폭력 예방은 단순한 법과 제도 마련을 넘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교육과 훈련, 자기성찰, 조직문화 개선, 사회적 통찰력 키우기 등)과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번 증보판은 성폭력 예방과 사건 처리 지침, 성폭력 발생 시 처리 지침과 각 기관의 역할과 대응 지침 등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심리·의료·법률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담아, 교회가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나아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돕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증보판을 위해 헌신해 주신 황지영 소장(젠더정의행동GOMA)와 임정혁 목사(한신교육연구소, 총회 성폭력 대책 전문위원), 총회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지침서를 출판 인쇄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지침서가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 없는 정의롭고 안전하고 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8월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10회 총회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안수경 목사

총회 총무 이훈삼 목사

발간사	004
-----	-----

I. 한국기독교장로회 성윤리 강령	012
---------------------------	-----

II. 성희롱·성폭력 이해하기	017
-------------------------	-----

1· 성희롱·성폭력 개념과 관련 법률	017
2· 교회 성희롱·성폭력의 특성 이해	026

III.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사건 처리 지침	035
----------------------------------	-----

1· 목적	035
2· 적용 범위	036
3· 기본 원칙	037
4· 개념 정의	038
5·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업무 지원	040

IV. 사건 발생 시 단계별 처리 지침	042
------------------------------	-----

1· 사건처리 절차	042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상담	047

V. 사건 발생 시 기관의 역할	054
--------------------------	-----

1· 교회 혹은 기관에서	054
2· 노회에서	064
3· 총회에서	075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079

VI. 사건 발생 시 각 주체별 대응 지침	087
--------------------------------	-----

1·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침	087
2· 주변인의 역할	094
3· 동료와 교회공동체를 위한 지침	097
4· 목회자(지도자)를 위한 지침	099
5· 가해자(행위자)를 위한 지침	101

Ⅶ.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

104

부록 1.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단의 정책과 법안	108
부록 2. 사건 해결 지도 따라 길 찾기	112
부록 3.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10가지 수칙	114
부록 4. 피해자 지원 기관	117
참고 자료	119
별지 1. 성폭력 사건 조사 신청서	121
별지 2. 성폭력 사건 접수 보고서	122
별지 3. 증인 확인서	123
별지 4. 성폭력대책위원회 협의록	124
별지 5. 성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125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10)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압니다.”

(요한1서 3:24)

I

한국기독교장로회 성윤리 강령¹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랑, 생명, 정의, 평화를 실현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고백한다. 하나님의 사랑, 생명, 정의, 평화를 실현하고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고백한다. 이러한 사명의 구체적인 실현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서도 드러나야 하며 이 시대 교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2018년 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미투, 위드유 운동은 오랫동안 있었던 지위나 나이, 힘을 이용한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성평등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담은 성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기장에 속한 모든 신앙인은 이 강령을 신앙인으로서 지켜가야 할 근본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¹ 제103회 총회(2018년)에서 이 성윤리 강령을 결의하였다.

서기 위한 길잡이로 삼을 것이다.

성경적 근거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창1:27) 하였고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롬2:11),(갈3:26-28) 대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 조건을 비롯하여 성(性) 차이에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성차별을 부추기는 가부장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다.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지위나 힘을 이용한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차별하는 것을 방관해 왔다. 이러한 교회의 성차별은 이제 끝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침묵하고 방관했던 잘못을 성찰하고 회개한다.

성윤리의 기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평등을 실현해 가는 것에 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여라.”(막12:30-31)는 예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천을 촉구한다. 성(性)은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한 ‘주님의 몸 된 교회’(엡1:23)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은총을 경험하는 장(場)이며, 사랑과 생명, 정의, 평화를 드러내는 곳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롬6:23)이 가득한 교회는 성평등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다짐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속한 우리는 모두 성 평등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성윤리 강령을 실천하기로 다짐합니다. 이 강령은 우리 교단 소속 목회자와 신도, 기관과 유관 기관의 모든 임원,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지키겠습니다.

1.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양하면서도 동등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하며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2. 우리는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을 차별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평등한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3. 우리는 나이나 지위, 힘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피해를 주지 않고, 성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는 칭찬이라도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며,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우리는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이픔에 귀 기울이며 신속하게 상담을 연결하고, 비밀보장, 치료와 돌봄,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며 법적 대응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나 신체, 정신, 지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와 성폭력은 더욱 엄중히 다루겠습니다.
7. 우리는 성폭력 사건이 있는 교회공동체의 어려움을 살피고 잘 돌보겠습니다.
8. 우리는 성범죄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하고 회개하게 하여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9. 우리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기장 내 각 단위마다 실시하겠습니다. (학부, 신대원, 인턴십, 각 노회와 교회)
10. 이를 위해 우리는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교회 성폭력 예방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평등의 실현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온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이러한 은총으로 공동의 선을 이루어갈 것을 성윤리 강령의 제정과 함께 다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10)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
심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압니다.” (요한1서 3:24)

II

성희롱·성폭력 이해하기

1. 성희롱·성폭력 개념과 관련 법률

성희롱과 성폭력은 원치 않는 행위로 성적자율권을 침해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로 모두 법률로 금지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희롱, 성폭력을 규정하는 각각의 법률에서 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취지가 달라 규율하는 법률과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

성희롱 관련 법률	성폭력 관련 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법)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참고] • 아동복지법 :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금지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금지	

-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행위자 개인이 법령(형법, 성폭력 처벌법)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의 등 범죄로서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디지털 성폭력도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 조직 내 성희롱의 예방과 근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에서 규율하는 성희롱의 경우는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를 통한 제재를 받게 된다. 강제추행 등 행위가 형법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지와는 별개로, 성적 언동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 등 성립 요건을 충족할 때 성희롱이 성립된다.

- 하나의 행위가 성희롱과 성폭력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는 행위, 겨안거나 가슴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육체적 성희롱 행위일 뿐 아니라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성폭력 범죄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성희롱에 해당한다.

-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고된 행위는 교회의 윤리적, 신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교회에서는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절차에 따라 별도의 판단을 해야 한다.

(1) 법률로 보는 성폭력의 유형²

① **강간, 유사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간음(성기 삽입)하거나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한다.

※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꿈쩍 못 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한다.

② **강제 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가슴 추행과 같이 추행 자체가 폭행인 경우도 포함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한다.

2 출처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성평등가족부(2026)

③ **준강간, 준강제 추행** :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으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말한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④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폭행 또는 협박, 위계 또는 위력 등 어떠한 추가 요건 없이 위 장소에서 추행을 하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한다.

⑥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또는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⑦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⑧ **디지털 성폭력** :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동의가 없이 상대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소지·구입·저장·전시·합성·제작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⑨ **스토킹 행위** :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 연락 등을 하여 불안감,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참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 사례로 보는 성희롱의 유형³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언어적 행위

- 음란한(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 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임신, 출산, 피임, 생리현상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비유나 행위를 묘사하는 행위 등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정의위원회 '성차별 발언 피해' 설문조사(2019)

- “딱 붙은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녀” 또는 옷차림을 지적하면서 남성들을 유혹하는 옷차림이라고 말하는 것
- “여자가 그렇게 똥똥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요즘 왜 이렇게 살졌어? 그래 가지고 남친(여친)이 좋아하겠어?”

- “아가씨 엉덩이라 탕탕하네”, “몸매 진짜 좋다. 누가 보면 처녀인 줄 알겠어”
-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운동하고 왔어? 어깨 한번 만져보고 싶다.”
- “우리 ○○씨~ 우리 이쁜이~ 우리 애인”, “내 애인이야~”
- “내가 총각이라면 (상대방)과 결혼할 것이다.”
- “성적인 문란함이 여성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치마가 짧다면서 고개를 숙이며) “다 보인다.”
- “여성이 총각김치를 맛있다고 하면 어떡하냐?”
-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어린 여자보다 나이 많은 여자가 좋다”와 같이 여성을 대상화하며 말하는 표현
- “몸매가 날씬해서 사람이 냉정해 보인다”라는 식의 외모 평가
- (동성 간)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오줌을 찔끔찔끔 싸냐, 건강은 괜찮냐?”는 식의 비유적 표현
- “남자 전도사님이 그거 먹고 힘쓸 수 있겠어요?”와 같이 전형적인 방식의 남성성을 강조하는 표현
- “차는 젊은 여자가 타 줘야 제맛이지...”, “여자 목사님(목회자) 이 커피 타주니 더 맛있네요”
- “믿음이 좋은 청년이 예쁜 자매와 결혼하는 거야”, “빨리 결혼해서 순풍순풍 애를 낳는 것이 자연 전도입니다”
- “여신도들이 가득하니 꽃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남북녀야, 여자는 북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쁘지”
- 찬양팀 여학생들에게, “머느릿감을 찾고 있다.”
- “여성은 약하니까, 누가 도와주세요”

3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입고 있는 티셔츠(옷)를 보며 “그 셔츠(옷) 맘에 든다. 한번 입어보게 벗어봐라.”라는 말을 여러 차례하고, 티셔츠(옷)를 잡거나 만지며 벗어보라고 한 행위
- 자신의 첫 목회지를(그냥 첫 목회지라 말하지 않고) ‘처녀 목회’라고 설명하는 것
- 자신의 성생활을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의 성생활에 대해 질문하는 행위
- 야동을 본 적 있는지 묻거나 자기 경험 이야기를 하는 것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격려한다고 어깨를 두드리며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면 어깨를 만지는 행위
- 허리에 손 두르는 행위 / 손으로 엉덩이를 톡톡 치는 행위
- 친한 척 포옹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행위 /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 입맞춤 혹은 손에 입맞춤하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 2차 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일하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하는 행위
- 자기 무릎에 억지로 앉히는 행위 / 무릎을 만지거나 베고 누우려고 하는 등의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 상의를 들어 올려 배가 드러났거나 드러나게 하는 행위

시작적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악수하며 상대의 손바닥을 자기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 / 악수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 손, 어깨, 팔 등을 접촉한 행위
- 손으로 볼을 지그시 누르듯이 밀거나, 이 행위를 할 때 손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끌고 가는 행위 등
- 음란한(성 관련)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통신, 전화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동으로 공동체의

기타

-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 채용탈락, 감봉, 전직(轉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으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 환경을 형성하는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교회 성희롱·성폭력의 특성 이해

(1) 교회 성희롱의 특성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혹은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 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고, 고용·업무 관계가 있어야 한다. 교회 내에서 성희롱은 임면, 지위, 근로조건 결정이나 교회에서의 직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성적 언동으로 공동체의 업무능력이나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일하는 환경이나 신앙생활 환경을 불쾌하고 열악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불쾌감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교회 내에서는 ① 목회자와 목회자 관계에서 ② 목회자와 직원 등 교회 내 고용관계 안에서 ③ 교회에 고용된 사람과 교

인의 관계에서 교인이 피해자일 때 또는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 피해자일 때 ④ 교회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과 교인의 관계에서(제삼자가 피해자일 때) ⑤ 교인과 교인 간의 관계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관계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상담이나 신고가 되면 교회는 예방 교육, 고충 처리, 가해자 징계 등의 사건 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갖는다. 다만,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되기는 어렵지만 일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⁴ 목회자, 장로, 교사, 사역자 등이 영적 권위, 신앙 지도, 상담, 기도, 안수, 심방 등의 신앙 활동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계·위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교회법상 중대하게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신앙생활-기도, 상담, 축복, 권면 등의 신앙적 행위-을 빌미로 공적인 관계와 원치 않는 사적 만남이나 연락을 강요하는 등 친밀한 관계의 경계가 모호한 특성이 있기에 모든 구성원이 성적 불쾌감이 발생하거나 자기결정권이

4 교회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내서. 기독교반성폭력센터(2025)

침해되지 않는 공간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다음의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 ①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피해자에게 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보다는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불쾌감을 느꼈는지’를 사회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② **한 번의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한다.**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아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③ **같은 성별 사이라고 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한다.** 성별의 같음과 다름은 성희롱의 성립 여부와 관련이 없다.

(2) 교회 성폭력의 특성

교회 성폭력은 교회라는 종교적 환경 안에서 예배, 목회적 돌봄 등의 관련 업무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회적 돌봄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 행위를 빙자해서 발생하는 성적 언동이 모두 성폭력이며 가해자의 물리적 힘의 행사나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는 관계가 없다.

신앙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행위의 유형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피해가 발생하는 맥락에 있어서는 ‘신앙’을 이유로 한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교회 성폭력은 매우 오랜 기간 가해 행위가 지속될 수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의 유형이 다양할 수 있고, 사건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의 사례를 근거로 정리한 교회 성폭력의 특성과 유형은 다음과 같다.⁵

- ① 교회 성폭력은 목회자를 비롯한 장로와 교사 등 교회 지도자와 신도 간의 절대적인 위계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그동안 지속해서 쌓아온 신뢰 관계가 있어서 피해자 대부분은 교회 지도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 이상하게 느끼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 ② 교회 성폭력은 목회자 자신을 영적인 부모로 칭하며, 자신의 행위를 성적인 행위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식으로 성폭력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교묘한 장치를 통

⁵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 교회성폭력예방지침서(여성신학사, 2018), 28-48

하여 이루어진다.

- ③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 목회자의 속임수와 ‘영적 길 들임(그루핑)’으로 인해 목회자를 특별한 방식으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목회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보았음에도 ‘주의 종’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 성폭력은 대부분 강간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다.
- ④ 교회 성폭력이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과정은 교회법으로 명문화된 경우가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핑계들이 문제를 덮고자 하는 정서나 조직 문화를 형성하여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
- ⑤ 교회 성폭력은 처리 과정에서 교회의 분파 싸움에 휩쓸려 피해자의 인권이 실종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 사실이 드러난 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사탄 마귀’라고 정죄되거나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등의 비난을 받고 교회에서 나가야만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내 분파에 휘말려 이용되다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⑥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한 교회 안에서 피해 대상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신도의 관계가 다양한 교회 활동을 통해서 지속되며, 가해자인 목회자는 피해자들을 길들여 성폭력을 신앙의 행위로 이해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속해서 성폭력을 행하기 때문이다.
- ⑦ 교회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은 영적인 어려움까지 추가되어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후유증보다 더 심각하다. 믿고 순종하던 목회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면서도, ‘주의 종’을 비난해서는 안 되며 ‘주의 종’을 용서하라는 주위의 강요가 있기에 피해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책하거나 이런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좌절하고 신앙에 대한 회의로 교회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빚기도 한다.
- ⑧ 교회 성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삶과 종교적 삶을 파괴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회공동체를 파괴한다.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대부분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한다. 교

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옹호하는 그룹으로 나뉘고, 교
회공동체는 분란에 쌓이게 된다. 교인들도 서로 불신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며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정리해 보면,

① 교회 내 성폭력은 절대적 위계관계와 영적 길들임(그룹링)
의 과정에서 신뢰가 악용된다. ‘하나님의 대리자’, ‘영적 부
모’, ‘영적 에너지 전달’, ‘치유의 과정’, ‘특별한 기도’ 등의
종교적 언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해자’로 명명하기 어
렵게 하거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성적인 행위라고
인식하는데 혼란을 가중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폭력 행
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는 가해
자가 ‘자신의 신앙생활보다 더 오랜 시간 목회경력이 길거
나’, ‘(고린도전서) 사랑 장을 예시로 들면서 자신의 행위가
사랑이고, 사랑을 잘 가르쳐주겠다.’, ‘저항이나 거부가 하
나님의 복음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하거나, ‘공동체 내에
서 관계가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의 요인으로 인해
피해를 말하기 어렵다.

② 교회 성폭력은 제자 훈련, 심방, 선교회 등 다양한 목회적

돌봄 활동을 구실로 피해자와 밀착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해서 발생하는 예도 많
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교회에 은
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명분 아래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는 폐쇄적 정서가 강력한 장벽이 되어서 피해자를 “사탄·
마귀”,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로 낙인찍어 고립시키는 경
우가 있다. 일부 교인은 피해자의 치유보다 가해자 축출이
라는 목적에만 피해자를 이용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생김
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가해자를 추종하
는 세력과 그를 감싸고 도는 모습들’이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의 고립, 외로움’, ‘이미 퍼진 악성루머 등 2차 가
해’, ‘교회 내 절차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고’, ‘가해자가 여
전히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상황 등이 피해자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

③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자라 믿었던 존재에게 배신당함으로써 신앙의 대상인 하
나님 자체에 대한 불신과 영적 좌절에 빠지게 되거나 “주
의 종을 용서하라”는 종교적 압박과 맞물려 성폭력 피해자
임에도 깊은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심하면 신앙 공동체
를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서 신앙

생활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 ④ 교회 성폭력에 대한 대처를 잘하지 못할 때는 극단적인 불신과 비난, 법적 소송 등 격렬한 내분에 휩싸일 수도 있고, 신앙적 유대감이 파괴되며 공동체 전체가 영적·윤리적인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교회 성폭력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교회 내부의 온정주의로 덮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사건이 발생하면 '권력형 성범죄와 영적인 학대'로 규정하고, 사건을 덮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더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III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사건처리 지침

성폭력 예방과 대처 지침(이하 지침)은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요 원칙이며, 교회와 노회, 총회는 이 내용을 반영하여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목적

본 지침서는 2018년 총회에서 제정된 성윤리 강령의 구체적 실현을 통해, 교회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교회 내 모든 구성원(목회자, 직원, 성도 등)이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사건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절차를 확립하고, 교회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 ① 이 지침은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 소속 교회 건물을 비롯하여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예배, 소그룹, 선교, 수련회 등 교회의 모든 활동 공간과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포함하며, 기장 소속 노회와 교회, 기관에 등록된 구성원(목회자와 성도, 기관과 유관기관의 모든 임원, 직원, 자원봉사자 포함)에게 적용된다.
- ② 이 지침은 기장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삼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 ③ 이 지침의 피해자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 적용된다.

3. 기본 원칙

- ① **피해자 중심주의** : 사건을 처리하는 모든 절차에서 관습적인 통념, 가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피해자가 경험한 피해의 맥락을 이해하고 지원해야 한다. 피해자의 인권(존엄성)과 관점, 안전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 ② **비밀 유지** : 직무상 사건 조사와 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조사와 피신고인(가해자) 징계 등과 같이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관계자들의(피해자, 가해자, 참고인, 조력자 등) 신원과 사건의 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③ **무관용 원칙** : 피신고인(가해자)의 지위나 영향력에 상관없이 법이나 교단 헌법,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다.

※ 참고: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제8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금지)

4. 개념 정의

- ①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인 인권 보장에 포함되는 권리로 타인의 간섭없이 자신의 성적인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
- ②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언어나 정신적, 신체적 행위나 요구를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③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포함하여 교회의 특수성을(영적 권위, 신앙, 돌봄 등)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④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동의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 저장, 제작, 합성, 게시, 공유, 유포, 협박, 전시, 판매, 시청, 소지하는 등의 행위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 ⑤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라.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 등에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마.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바.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⑥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신고인, 조력인, 대리인을 의미한다.
- ⑦ **‘신고인’**은 피해에 대해 조사를 요청한 사람, **‘피신고인’**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⑧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자 등이 상담, 조사 신청과 조사 과정과 이후, 협력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맥락에 따라 ‘2차 가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5.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업무 지원

- ① 교회 등의 기관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직무를 맡은 담당자와 업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비난, 압박, 강요, 협박 등의 공정한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② 교회 등의 기관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직무 담당자 등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이나 ‘전문

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③ 교회 등의 기관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 등’에게 사건의 진행 과정을 안내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④ 교회 등의 기관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방법과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이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참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 ⑤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IV

사건 발생 시 단계별 처리 지침

1. 사건처리 절차⁶

(1) 상담

- 피해자, 조력자, 대리인 등은 구두, 서면 등을 이용하여 상담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피해자가 공식적인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면 교회(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조사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해야 한다.

→ 기관(교회)은 공식 기구로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

고, 사건 진행에 대한 절차를 수립한다.

- **외부 전문기관 연계** :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외부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으로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피해자가 의사표시를 하기 어렵거나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결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 가해자가 담임 목회자인 경우 교회에서 직접 사안을 다루지 않고, 상위 기관(노회, 총회)에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2) 사전조치

- **피해자보호** : 공식적으로 사건처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립, 불이익, 사역(봉사) 배제, 침묵 강요, 예배 참여 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해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출근을 제한하고, 예배 참석을 일시 제한하는 등 가해자와 물리적·업무적·신앙 활동의 공간을 분리하여야 한다.
- **2차 피해 방지** :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에 대한 비난, 합의 강요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2차 피해임을 통보한다.

6 교회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내서, 기독교반성폭력센터(2025)

- **공동체 내 공지** : 구성원들 대다수가 사건을 인지하여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은 후에 공동체 내에서 신고된 사안에 대해 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공지하여서 억측, 소문, 비난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단, 피해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피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신고인(가해자)이 징계나 처리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사직서나 노회 이명 청원, 교단 탈퇴서 등에 대해 사건의 최종 심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수리하지 않고, '무관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3) 조사와 심의위원회 구성

- **조사위원회** : 조사위원은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을 직접 만나서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듣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심의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한다. 조사위원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독립적·중립적으로 사건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사 기간** : 사건접수 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가능하면 20일 이내 필요시 10일 연장하여 30일 이내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심의위원회** : 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사건에 대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조치와 재발 방지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당회, 기획위원회 등 교회 치리 기구가 담당하되 피해자 지원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 **조사나 심의위원회 진행이 내부에서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 관과 협력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는 교회에서 직접 조사 등의 과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적절한 방법을 찾거나 총회 성폭력대책위에 이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4) 조사

- 피해자→참고인→피신고인 순으로 면담하고, 객관적 자료 수집과 조사 내용은 기록으로 남긴다. 피해자에게 진술을 유도하거나 반복 진술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참고인과 피신고인에게는 사건 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다른 구성원들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다.

(5) 심의위원회

-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여부를 판단한다. 성희롱에 해당하면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보호의 구체적인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논의한다.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을 때도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심의 결과에 따라 성폭력 범죄가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기관(교회)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6) 후속 조치

- 기관(교회)은 심의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여 가해자를 처리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담임목사, 장로일 때에는 노회 재판국이나 총회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역자나 직원일

때 해임, 파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나 평신도나 리더의 경우에는 직분 해임, 수찬 정지, 출교 등의 징계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

- 조사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관(교회)은 가해자에게 권고한 조치들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기관(교회)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교회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신앙적 돌봄의 대안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과 교회의 조직문화 점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상담

(1) 최초 상담자 상담 요령⁷

⁷ 참고: 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제별 대응 지침 라인(임정혁 목사, 2019)

- 상담 신청자가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과 요구를 말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상담 신청자가 편안해 하는 공간을 정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 상담 신청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상담 내용이 철저히 비밀 보장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공유한다. 상담 도중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등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상담자는 상담 신청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함으로써 상담 신청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대답과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편안하게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상담자는 상담 신청자가 설명하는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담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안내하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상담자와의 상담을 기초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결정하면, 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고인이 문서를 작성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상담

신청자의 동의하에 대리인을 통하거나 녹음이나 속기하여 기록을 보존한다.

- 상담 신청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일 때 더욱 편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매우 긴 호흡으로 천천히 상담에 임해야 한다. 또한 내담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호자나 대리인이 상담 신청자의 진술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함께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상담은 피해자·상담 신청자의 입장과 상황을 파악하는 초기 단계로서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을 갖추어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구제 절차의 전 과정을 숙지해야 한다.
 - ① 선불리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며 듣는다.
 - ② 피해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 ③ 상담자는 피해자 의사와 별도로 사건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않는다.
 - ④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양한 통로를 소개한다.
 - ⑤ 피해자가 결정하기까지 독촉하지 않고 기다린다.

- ⑥ 피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 ⑦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다양한 해결 통로를 소개한다.
- ⑧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초 상담자는 사건을 해결하는 ‘조사관’이나 ‘재판관’이 아니라, 피해자가 안전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돕는 ‘안전 기지(Safety Base)’이자 ‘조력자(지원자)’이다. 최초 상담자의 태도는 피해자의 트라우마 악화 여부와 공동체의 온전한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기본 원칙과 태도

- **트라우마 정보 기반 경청** : 트라우마 상태의 피해자는 기억이 파편화되거나, 연대기가 섞이거나,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감정(무덤덤함, 웃음 등)을 보일 수 있다. 진술의 모순이나 빈틈을 찾아내려 유도신문 하거나 채근하지 않는다. 일관성이 부족하더라도 선불리 의심하지 말고, 대담을 강요하지 않는다.
-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뢰 구축** :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눈다”라는 명목으로 목회자나 당회에

즉시 구체적 사실을 공유하는 행위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 상담 중 나누는 모든 내용은 피해자의 서면 동의 없이 외부(담임목사, 당회, 가족 포함)에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상담 시작 전, 비밀보장의 범위와 예외 조건(자해/타해 위험, 미성년자와 장애인 대상 지속 범죄 등 법적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을 명확히 고지하고 신뢰를 구축한다.

- **피해자 중심주의와 ‘자기결정권’ 존중** : 상담자가 의욕 앞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며 직권으로 가해자를 찾아가거나 소문을 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해자는 사건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해결 과정의 ‘주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상담자는 해결 방안(교회 내 징계, 형사 고발, 외부 기관 연계, 치유 집중 등)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안내할 뿐, 선택과 결정은 오롯이 피해자가 스스로 내리도록 조력하고 그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 상황을 지나치게 묘사하게 하거나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3) 초기 면담 실무 가이드 (Step-by-Step)

- **공간과 환경 조성** : 사건과 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공간이나, 외부의 시선이 차단되고 출입이 자유로우며 방음이 확실한 곳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제삼자(가해자 측, 언론, 소문 유포자 등)가 접근하거나 상담 과정을 관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대화와 지지 언어** : 상담자의 첫 마디는 피해자의 자책을 멈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주는 언어이어야 한다.
- **안정과 지지** :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힘드셨을 텐데 말하기까지 큰 용기를 내셨네요”, “이 사건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을지,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 봅시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절차는 강제로 진행되지 않을 테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등
- **금지해야 하는 말** (2차 피해) : (피해자 책임론) “그때 왜 거부하지 않았나요?”, “왜 바로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지 않았죠?”, “왜 거부하지 않았나요?” (가해자 옹호와 의심) “가해자가

정말 그러셨을 리가 없는데, 오해한 것 아닌가요?” (영적 학대와 합의 중용) “교회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 조금 더 기도해 보고 용서하는 건 어떨까요?” “교회를 위해 용서하세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 **서면 접수와 증거 보존 안내** : ‘사건접수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고인이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자가 동의받고 작성할 수 있다. 최초 상담자는 피해자에게 당시의 메신저 캡처, 문자, 통화 녹음, 일기장, 병원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을 차분히 안내한다.

※ 미성년자나 장애인 피해자 등의 경우에는 비유적 표현을 피하고 매우 쉽고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상담 전 관련분야 전문가나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한다. 보호자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부모님(보호자)이 이 사실을 알아도 괜찮은지, 상담에 같이 들어오길 원하는지” 확인하되, 가해자가 친족이거나 교회 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라면 다른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사건 발생 시 기관의 역할

1. 교회 혹은 기관에서

(1)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교회와 소속 기관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속·공정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독립기구로서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상설 또는 즉시 구성해야 한다.

- **위원 구성 수**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외부 전문가 필수 위촉**(공정성 확보) : 위원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로만 구성하지 않고 성폭력 관련 외부 전문가(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전문상담사, 총회 성폭력대책위 위원 등)를 2명 이상 포함한다.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회 성폭력대책위에 지문한다.

- **전문가 자격 요건** : 상담이나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 ‘성폭력 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이수했거나 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 상담 경험이 있어야 한다. 기관(교회)에 조건을 갖춘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교단에서 인정하는 관련 교육 이수자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사건 인지와 초기 대응 단계 (상담·접수·임시조치)

사건을 인지하거나 상담 신청을 받은 즉시, 교회 지도자와 접수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즉각적인 물리적·조직적 분리와 피해자 우선 보호

- 사건이 인지된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행위자)를 분리한다. 공간적 분리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시간대 조정, 소그룹(구역, 셀, 목장 등) 재배치, 온라인 공간(공식 단톡방 등)에서의 분리를 포함한다.

- 전문가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 임의로 조사하지 말고 즉시 총회(또는 노회)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전문가 연계를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 상담과 조사 과정에서 기관(교회)과 상담원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2차 가해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 성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상담과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이거나, 피해자 본인이 결정을 하지 못할 때도 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면 공동체의 안전과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성폭력 범죄에 해당할 때는 사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미성년자·장애인 사건의 즉각적 신고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인지 즉시 관련 위원회 보고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예외 없이 즉각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와 단둘이 만나 무리하게 진술을 확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전문 신뢰관계인(상담사, 변호사 등)이 동석한 상태에서 하거나 전문기관에 연계해야 한다. 보호자가 가

해자이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경우 등에는 신뢰관계인으로 외부 전문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철저한 비밀 유지와 서면 접수

피해자의 개인 신상과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정해진 양식에 따라 '사건 조사신청서'를 작성한다. 교회의 규모가 작아 철저한 비밀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상급 기관(총회 성폭력대책위원회)으로 조사신청서 등을 이관하여 조사를 위탁한다.

다양한 피해자 지원체계 연계

교회 내부 정서적 돌봄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전문 성폭력 상담센터,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심리 상담, 법률·의료 지원 등 실질적인 자원을 제공한다.

가해자에 대한 임시 조치와 '사직' 방지

가해자가 목회자, 장로 등 교회의 핵심 지도자일 경우 징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다음의 임시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다.

- **직무 정지** : 사건의 심의 결정과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즉시 설교, 목회, 성례, 선교, 소그룹 인도 등 교회의 모든 공

적·사적 활동을 중단(직무 정지)시킨다.

- **사직과 탈퇴 차단** : 가해자가 조사를 회피하거나 교회법 피고인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직서’ 또는 ‘교회 탈퇴서’ 수리를 최종 징계 결정 시까지 전면 보류한다. 위원회의 정당한 조사와 재판 절차를 거쳐 징계(정직, 면직, 출교 등)를 완료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
- **접촉 금지 명령** : 피해자와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전화, 문자, SNS, 제삼자를 통한 대리 전달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접촉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접촉 금지 임시 조치’를 안내한다.
- **가해자가 일반 신도일 때** : 가해 신도 역시 최종심의 전까지 예배 출입 제한, 교회 내 소그룹과 모든 활동 금지, 피해자 동선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같이 시행할 수 있다.

(3) 성폭력대책위원회 진상조사와 심의

모든 조사와 심의 과정은 객관성을 담보하되, 피해자가 조사 과정 자체로 인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 요구 파악과 대리인 제도 강화

피해자의 피해 사항과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며,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변호사, 외부 상담소 활동가 등)은 모든 조사와 심의에 동석·참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통화 녹음, 사건 직후 작성된 일기나 메모, 주변인의 목격과 전문(傳聞) 진술 등의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행위자(가해자) 조사와 2차 피해 금지 안내

행위자 면담 시 엄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할 때 서면 조사와 기존 증거만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린다. 행위자에게 사건의 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진행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려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접촉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보복 행위 금지’ 서약서를 받는다. 위반하는 경우 추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린다.

피해자 알 권리 보장

위원회는 진상조사 진행 상황, 위원회 일정, 최종심의 결과를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서면, 이메일, 보안 메신저 등)으로 바로 통

지해야 한다.

비밀 유지와 2차 피해 예방

상담원, 조사위원, 제직회, 당회 등 사건을 인지한 모든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개인 신상과 조사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소문을 유포한 행위는 '2차 피해'로 규정하여 교회 정관과 교회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하여야 한다.

(4) 징계

교회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공동체의 거룩성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타협 없이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심의 결과

심의 결과 '성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의 의결 기구(당회 등)는 감경 없이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가해자 신분별 구체적 징계

가해자가 목회자일 경우 : 담임목사 또는 부교역자가 가해자일

경우, 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당회는 즉시 가해자의 교역자 직무를 정지하고, 노회(재판국)에 심의 결과 보고서와 함께 '면직(목사 자격 박탈)과 출교'를 공식 청원할 수 있다. 교회는 노회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해당 목사에게 지급되던 전근비, 위로금 등의 부당한 재정 지원을 금지할 수 있다.

가해자가 장로, 집사, 권사 등인 경우 : 심의 결과가 당회에 보고되면, 당회의 권한 또는 공동의회 절차를 통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직분 해임, 수찬 정지(성찬 참여 금지), 출교(제명) 등 가능한 내용의 징계를 집행한다.

결과 통보

심의와 징계 최종 결과를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 서면으로 공식 통보한다.

(5) 종결과 조치 이행

사건의 외형적 종결 이후, 피해자의 온전한 삶의 회복과 공동체의 건강한 재건을 위한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가해자 조치와 재발 방지 프로그램

가해자가 의무 이수해야 하는 성폭력 예방과 성인식 개선 교육을 최소 10시간 이상 대면 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이수증 또는 상담 결과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징계와 교육 이수가 끝났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한 가해자의 교회 복귀와 직분 재임명을 제한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록은 목회자 청빙이나 이명 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때에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해당자가 교단 내에서 사역하는 동안 보관한다.

공식 보고와 기록 보존

위원회는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나 총회에 사건의 종결과 조치 결과를 공식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피해자 지원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치료 비용을 교회가 책임지고 지원한다.

피해 교역자와 직원의 '노동권과 생계 보장'

피해자가 부목사, 전도사, 교회 간사, 사무원 등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인 경우, 사건처리 기간과 종결 후에도 고용 안정과 기존 급여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부서 변경이나 근무지 변경을 요청할 때 협의하여 반영하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휴가를 원하면 유급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시적 감시 체계 구축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위원회를 정기 가동하고, 매년 전 교인 대상 의무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공동체 내부의 권력 구조와 성평등 지수를 상시 감시한다.

공동체 영적 돌봄을 위한 노력

사건으로 인해 상처 입은 교인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교육, 세미나 등을 개설한다. 무조건 용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성경의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가르치고, 깨어진 공동체적 신뢰와 유대감을 회복하기 위한 전교인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 노회에서

노회는 지교회를 감독하는 상급 기관이므로 특히 목회자 성범죄에 대해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독립적이고 엄정한 사법 절차(노회 재판국)를 신속히 가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교회 혹은 기관의 절차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앞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1) 성폭력대책위원회 구성

노회는 관할 내 지교회와 기관의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심의·중재하기 위해 독립적인 ‘노회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노회 대책위)’를 상설 또는 즉시 구성한다.

- **위원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의 수를 홀수로 구성하여 가부동수로 인한 지연을 방지한다.

- **외부 전문가 필수 의무 조항** : 위원회의 대외적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회 소속 목사·장로로만 구성하지 않고 성폭력 관련 외부 전문가(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전문 상담사, 총회 성폭력대책위 위원 등)를 2명 이상 포함한다.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회 성폭력대책위에 자문한다. ※ 전문가 자격 요건은 교회 혹은 기관과 동일하다.

(2) 사건 인지와 접수 단계

(지교회를 거치지 않고 노회로 직접 접수된 경우)

피해자가 개교회 내 가해자의 영향력이나 은폐 시도를 우려하여 노회로 직접 사건을 접수한 경우, 노회 대책위는 즉시 다음과 같이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즉각적인 긴급 분리와 지교회 명령권 발동

노회는 즉시 가해자의 해당 지교회 내 목회 직무와 당회장권을 일시 정지시키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교회 공간, 소그룹, 온라인 공간 등에서 절대 접촉할 수 없도록 지교회에 강제 명령을 하여야 한다.

조사와 노회의 역할

상담과 초기 조사는 안전한 공간에서 하고, 피해자가 영적 학대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노회 내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도 임의로 목사가 상담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즉시 총회 성폭력 대책위원회 또는 외부 기독교 전문 상담소에 전문 상담원을 요청하여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노회는 지교회가 비용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초기 심리 상담과 의료·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철저한 비밀 유지와 상급 기관(총회) 이관

조사신청서와 모든 진술 기록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노회 임원회나 정기노회에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이 구두로도 보고·유포하는 것(2차 피해)을 절대 금지해야 한다. 노회 내 갈등과 같은 이유로 비밀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총회 성폭력 대책위원회로 사건을 이관하여 진행할 수 있다.

가해 목회자 임시 조치와 '사직' 방지

가해자가 목사, 장로 등 노회 관할 임직자일 경우 최종 재판

판결 시까지 다음의 강력한 임시 조치를 의무화한다.

- **직무 정지와 수찬 정지** : 조사와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설교, 축도, 심방, 성례전 집례 등 목사로서의 모든 영적·행정적 직무를 즉각 정지시킨다.
- **사직과 교단 탈퇴 처리 금지(징계 회피 방지)** : 가해 목회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나 다른 교단으로 가기 위해 제출하는 '사직서' 또는 '교회/노회 탈퇴서'는 노회 임원회에서 절대로 수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반드시 노회 재판국의 정식 재판을 거쳐 징계(정직, 면직, 출교 등)를 완료한 후에 행정 처리한다.
- **2차 피해 금지와 노회 명령 위반 시 가중 처벌** : 가해자가 피해자와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전화, 문자, SNS, 제삼자를 동원해 회유·협박하는 행위 등의 2차 피해를 금지하는 '접촉 금지 명령'을 한다. 지교회 교인들을 선동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노회는 이를 심각한 2차 가해이자 재판 방해로 규정하여 재판 시 가중 처벌 사유로 삼을 수 있다.

(3)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진상조사와 심의

지교회의 당회나 공동의회 또는 기관의 결의로 가해자 징계를 요청한 경우

지교회 당회, 공동의회 또는 기관 이사회에서 조사를 거쳐 노회에 징계(목사 면직, 파면 등)를 공식 청원한 경우, 노회의 관련 위원회는 상급 치리회로서 공정성과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지교회 조사 결과와 보완 조사

해당 교회(기관)가 제출한 1차 진상조사 보고서와 심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다. 개교회 조사가 온정주의로 흐르거나 부실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회 특별위원회가 직접 전면 보완 조사를 할 수 있다.

다각적 증거와 증인 진술 확보

사건의 신속한 입증을 위해 증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해자 측 증인의 악의적인 진술이나 피해자 모욕성 발언은 채택하지 않는다.

가해자 조사와 피해자 진술 대체 규정

가해자를 소환하여 대면 조사하되,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할 경우 서면 조사와 기존 증거만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린다.

결과 보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회 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 [참고] 기소와 재판국 즉시 구성 :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2차 가해가 심각한 경우 포함), 대책위원회의 심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치부를 거치지 않고 노회 임원회 결의로 즉시 재판국을 구성하여 본안 판결(면직 등)로 직행하는 제도를 적용할 수도 있다.(이 경우 대책위의 사실조사 기록이 재판국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4)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진상조사와 심의

피해자나 대리인에 의해 사건을 직접 접수(고소·고발)한 경우 : 가해자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이거나 장로여서 개교회 당회나 기관의 이사회를 경유하는 등의 정상적인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체의 은폐·압박이 극심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해자가 교회의 담임 목회자이거나 당회의 날인을 받을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당회를 거치지 않고 경유 거부 사유를 적은 '사유서'를 첨부하여 노회 서기에게 바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며, 노회는 이를 정상 고소장과 같이 의무 접수해야 한다.

피해자 중심의 조사 환경과 상담원 지정

접수 즉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사항과 요구 사항을 파악한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신뢰 형성을 위해 전문 상담원이나 조사위원을 지정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이 모든 조사 과정에 대리인으로 동석할 수 있고, 경찰 조사 진술서나 성폭력 상담 기록이 있는 경우 공식 진술서로 채택하여 피해자의 진술 반복으로 인한 재외상화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다.

객관적 정황과 2차 피해 증거 확보

교회 내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방이나 교인들의 진술, 당회록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광범위하게 확보한다. 사건접수 이후 가해자 측이 교인들을 동원해 행동한 유언비어 유포, 예배 시 비난 등의 2차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도 함께 수집한다.

가해자(목회자 등) 진술 청취

노회는 가해자를 소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조사한다. 가해자가 대면조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면 서면 조사와 기존 증거만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노회의 처리를 따르지 않는 행위로 재판 시 반영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심의 결과 보고

조사 완료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노회 임원회에 제출한다. 사안이 심각하여 면직, 출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정치부(기소위원)를 통해 노회 재판국에 정식 기소 절차를 밟도록 강제한다. 대책위의 조사는 기소장 제출과 동시에 재판국의 본안 심리로 전환될 수 있다.

조사와 심의 시한(지연 방지)

- **조사 시한** : 가해자가 시간을 끌어 노회 정기회기 넘기기를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진상조사와 심의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20일+ 연장 10일)에 완료하고 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연장 제한** : 특별히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5) 노회의 처리와 징계

신속한 기소위원회 구성

노회 임원회는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행위 사실 결과를 확인하면 노회장은 바로 기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식 기소를 결정한다. 대책위의 심의 결과서는 기소의 절대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재판국의 독립성

기소와 동시에 독립된 재판국을 구성하고, 재판국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을 홀수로 구성한다. 재판국 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판국원 중 2인 내외의 인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소된 사안에 대해 총회 성폭력대책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의견서를 수령하여 판결에 참조한다.

재판 규정의 준용과 무관용 원칙

성폭력 범죄 재판은 본 지침을 최우선 적용하고, 총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사회의 관련 법령도 적극 참고한다. 재판 결과에 따라 가해자는 엄격히 처리·징계하되, 면직·출교 조치 시 가해자의 목사 면허와 노회원 자격은 즉시 영구 박탈해야 한다.

가해자 징계 실효성 강화

징계와 별도로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성폭력 예방과 성인지 인식 개선 교육은 최소 10시간 이상 대면 교육으로 조치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2차 피해 방지와 법적 책임 고지(비밀유지의무)

노회 임원, 정치부원, 기소 위원, 재판국 원 등 사건처리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상과 진술 내용을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나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소속 부서, 사건 정황 등)를 노회 보고나 기도회 등의 명목으로 노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력히 알려야 한다.

(6) 종결과 조치 이행

치리 결과 기록 보존과 총회 보고

가해자를 처리한 즉시 노회는 사건 결과를 보관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록은 목회자 청빙이나 이명, 타 교단으로 진출을 가는 경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때에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 목회자 청빙·이명 정보 검증 의무화

가해 목회자가 교회를 옮기기 위해 이명(노회 이동)을 신청하거나 타 교회가 청빙을 시도할 경우, 노회 서기는 청빙 대상 교회와 해당 노회에 가해자의 성폭력 이력과 징계 사실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가해자가 징계를 피하려고 노회를 탈퇴하여 타 교단이나 독립교단연합회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면 사직 처리를 허용하지 않아야 하고, 해당 교단 총회 등에 가해자의 성범죄 면직 사실을 통보할 수 있어야 한다. 조기 은퇴로 징계를 피하려고 할 때에도 사직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상시적 감시 체계 구축

노회는 사건 발생 이후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노회 산하 전 교회의 담임목사, 장로, 시무직원을 대상으로 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지교회 공동체 회복 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회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성도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영적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3. 총회에서 (상소와 최종심)

총회는 노회의 연고주의나 온정주의 판결을 바로잡고, 가해 목회자가 교단 헌법의 빈틈을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총회의 재판과 재판국 구성

피해자 권리 보장

가해자가 노회 내 기득권 세력이거나 노회 임원회의 방해로 정상적인 상소 절차(노회를 경유하는 절차)가 불가능할 경우, 피해자와 대리인은 경유 거부 내용을 담은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회 서기 행정 창구로 직접 상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총회는 이를 즉시 정식 안건으로 접수해야 한다.

하급 처리회(노회) 재판 서류의 엄격한 법리 검토

해당 노회 재판국이 제출한 판결문, 조사 기록, 증거 자료를 재확인한다.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에 관한 판단과 처리 과정이 공정했는지 등을 엄격하게 살펴본다.

기소위원회의 신속한 기소 여부 결정

총회 기소위원회는 상소 사실과 대책위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정식 기소와 재판 개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합니다.

- **재판국의 독립성** : 재판국 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을 홀수로 구성하고, 전문가 2인 내외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위나 조력자가 있는 경우 재판국 구성 시 전문가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 재판국은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받아서 첨부하고,

재판국의 판단에 참고한다. 재판국은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회법의 관련 법령의 판례와 성인지감수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준용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무관용 원칙에 따른 총회 최종 양형 기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는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온정적 처벌을 금지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피해자보호와 2차 피해 예방

노회 임원, 정치부원, 기소 위원, 재판국 원 등 사건처리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상과 진술 내용을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나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보고 등의 명목으로 노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강력히 알려야 한다.

(2) 종결과 조치 이행

노회를 통한 집행과 결과 확인

총회의 판결 결과를 해당 노회에 보내 즉시 집행하도록 하고, 가해자 징계와 관련한 행정 처리를 완료한다. 가해자가 의무

이수해야 하는 외부 전문기관의 성폭력 예방과 성인지 교정 교육 프로그램을 최소 10시간 이상, 대면 교육으로 받도록 하고, 이수 여부를 총회 관련 부처에서 직접 확인·감독해야 한다.

※ 총회와 노회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사건에 관한 내용이나 사건 관계자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

가해자가 이름을 바꾸거나 이력을 세탁하여 타 노회(교회), 타 교단으로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성폭력 판결 이력을 보관하고, 노회(교회)나 타 교단에서 목회자 청빙 시 총회는 가해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결과와 면직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단, 개인정보 유출과 비밀 유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총회는 교단 내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총회 총대와 총회 산하 모든 노회원의 연 1회 성폭력 예방의무교육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사건 발생 이후 해당 노회와 교회는 특별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 2018년 103회 총회에서 채택한 성윤리 강령의 구현 의지를 분명히 한다. 성폭력 근절과 예방은 지속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구체적인 의지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노회와 총회는 모든 노회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을 연초에 계획하고, 1년에 1회 이상 교육 해야 하며, 노회는 총회에 이를 알린다. 총회는 가을노회 이 후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의무 교육 이행 확인)

교회 성폭력 사건처리 지침

총회와 노회는 성폭력 근절이 일회성 처벌이 아닌, 지속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구조적 개선 의지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음을 상기하며, 사건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본 준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1) 의무 교육 이행과 총회의 감독 권한 강화

연례 교육 계획과 보고 의무 : 노회와 총회는 모든 노회원(목사·장로)에 대한 성폭력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연 1회 의무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노회는 교육 결과를 총회에 서면 보고한다.

총회의 사후 검증과 제재 : 총회는 노회의 의무 교육이 대면 교육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 노회에 대해서는 교육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2) 조사·재판 과정의 철칙과 입증 책임의 전환

① **사적 의견 표시 금지(독립성 보장)** : 사건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총회·노회·교회(기관) 관계자 등은 어떤 방법으로든 신고인(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인 의견 표시(예: “양측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 “친밀해 보이던데” 등)를 하지 않는다.

※사건처리에 관련된 위원들에게 사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도 2차 피해에 해당되므로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지교회 불신에 대한 이해와 신속한 직권 조사** : 구조적 압박으로 인해 신고인이 지교회(당회)를 신뢰하지 못해 노회·총회로 직접 청원한 경우, 상급 치리회는 이를 깊이 공감하고 바로 지침대로 직접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의 주저함, 느장 대응, 소극적인 태도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2차 피해(공동체적 방임)가 됨을 인지한다.

③ **노회 성폭력대책위원회** : 총회는 노회 내 ‘성폭력대책위원회’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상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건접수 즉시(48시간 이내)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명단을 구성하여 놓을 수 있다.

④ **피해자 중심주의** : 재판국은 대법원 판례의 ‘성인지 감수성’ 원칙을 적용하여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켜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 편집, 축소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기록하며 피해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를 잘 기록해야 한다. 가해자가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 내야 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판결해야 한다. 사건의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건이 외부

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⑤ **‘교회 평화’를 빙자한 용서 강요 금지** : 피해자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공동체의 평화와 은혜를 위해”라는 명분으로 가해자에 대한 합의, 고소 취하, 이해, 합의 없는 용서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성경의 정의를 왜곡하는 행위로 더욱 엄격히 금지한다.

(3) 가해자의 징계와 공동체 회복 방안

- ⑥ **2차 피해 금지 서약** : 가해자 소환 즉시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리며, 추가 피해 발생 시 본안 판결 외에 별도로 기중 처벌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 ⑦ **재발 방지 약속** : 가해자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서를 징구하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한다.

- ⑧ **성급한 공동체 복귀 차단과 재범 방지 교육 의무화** : 가해자가 정당한 징계와 자숙 기간을 채우기 전에 선불리 사역이나

공동체에 복귀하지 않도록 감시한다. 복귀 여부를 논하기 전, 전문가 또는 기관이 진행하는 ‘성희롱·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과 왜곡된 성인식 교정 프로그램(최소 10시간 이상 대면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강제한다.

- ⑨ **절차에 따른 서면 통보** : 노회와 총회는 조사와 재판 최종 결과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공식 서면이나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결과뿐만 아니라 통보에 이르는 행정적 절차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⑩ **모니터링으로 인식 전환**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특정 개인의 일탈이나 개별 사건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배격한다. 범죄행위가 발생하기까지 우리 공동체 내부의 성평등 시스템의 부재, 왜곡된 권위주의 등의 조직문화의 문제임을 인정하고, 노회·총회 차원의 시스템 보완에 집중한다.

(4) 신고자·조력자 불이익 처우 금지

총회와 노회는 피해자, 제보자, 신고자, 조력자에 대하여 고충 상담, 조사 신청, 증언,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의 ‘불리한 처우

와 인사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① **신분상 불이익** : 해고, 파면, 면직, 직위해제 등 신분 상실을 유발하는 모든 조치

② **부당한 인사 조치** : 직무 미 부여, 사역 배제, 부당한 직무 재 배치 등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

③ **역량개발 제한** :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박탈, 선교와 연수 기회에서의 제외

④ **행정적 보복** : 노회의 이명(이동) 거부, 청빙 과정에서의 악의적 소문 유포와 추천 거부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⑤ **공동체에서의 심리·정서적인 괴롭힘 등** : 모든 정신적·육체적·언어적 괴롭힘과 따돌림 행위

※ 참고 : 대한민국헌법,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 등

(5) 2차 피해 유형

노회와 총회는 아래의 행위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를 심각한 '2차 피해'로 규정한다.

①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선부른 화해 중용과 사건의 은폐로 종결 시도

② 피해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고, 앞으로의 조치를 교회의 리더들이 임의로 지정하거나 단일 안(합의 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행위

③ 기도 제목 나눔, 보고서 공유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의 성명, 소속, 직분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④ “피해자가 원인 제공을 했다.”, “유혹했다”라는 등의 피해자 책임론의 논리를 공동체 내에 유포하는 행위

⑤ 피해 사실의 본질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과거 이력, 성격, 평소 태도, 사생활, 심지어 신학적 성향을 문제 삼아 흠집을 내는 행위

⑥ 재판과 조사 편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건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진술, 중복 출석 등을 요구하여 재외상화(반복적 외상)를 유발하는 행위

⑦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가해자와의 권력형 성폭력 관계를 '연애', '외도', '서로 사랑했던 사이' 등으로 규정하여 유포하는 행위

- ⑧ 설교, 강의, 교육, 저술, 보고서 등 모든 공적 범주에서 피해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유추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례를 노출하는 행위
- ⑨ 기타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는 모든 유·무형적 적대 행위

(6) 결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방법입니다.

사건 발생의 책임을 면하려는 ‘조직 보위주의’나 가해자와의 ‘개인적 친분이나 연고주의’를 앞세워 사건을 온전하게 처리하지 않고 은폐·축소하는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 피해자보호와 사건의 공명정대한 처리가 곧 공동체의 안전과 존립의 기반을 보존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피해자보호에 기반한 사건처리를 해야 한다.

VI

사건 발생 시 각 주체별 대응 지침⁸

1.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침

(1)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기본 원칙

- **가해자 책임 명시** : 성희롱·성폭력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잘못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 자신을 탓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자신의 존엄성과 일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 **내면의 회복** : 성폭력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된 분노, 불쾌감, 무력감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회복과 해결 방식’이 중요하므로, 혼자 감당하지 말

⁸ 참고 : 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지침(임정혁 목사, 2019)

고 신뢰할 수 있는 조력인이나 전문 상담가와 함께 마음을 풀어내는 것이 좋다.

-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연계** :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으나, 사건의 공정한 해결과 보호조치를 위해 가능하면 총회 성폭력 대책위원회나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 기관(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의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 대한 권리** : 사건을 접수하고 초기 진술을 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의 시선이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차단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독립된 공간, 진술 조력인 동석 등)과 사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건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 성범죄는 동의·합의·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사건의 핵심이므로, 당황하거나 두려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자책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한다.
- **물리적 증거 보존과 신체 보호** : 신체적 상해가 동반된 성추행이나 성폭행(유사 강간 포함) 등이 발생하였을 때 샤워하

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곧바로 지역 내 해바라기 센터(경찰, 의료, 상담)나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이동이 즉시 불가능하다면 당시 입었던 의복과 소지품을 최대한 손대지 말고 종이봉투에 잘 보관한 후 1366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즉시 신고하지 않더라도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조직 내 보호조치와 법적 구제 절차

-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 요청** : 피해자는 사건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총회나 교회에 근무시간 변동, 근무지 변경(공간 분리)이나 유급 휴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참고]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에 대한 조사 의무와 피해자 분리와 보호조치 의무가 있다.

- **공적 구제 범위 확대**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역(근로)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목회자(부목사, 전도사 등)와 교회 직원은 현행법상 근로자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검

도할 수 있다.

2차 피해 예방과 외부 대응 규칙

- **불이익 조치 금지와 구체적 기록** : 피해자는 성폭력 신고, 진술 등을 이유로 해고, 징계, 부당 전보, 따돌림, 악의적 소문 등 고용과 조직 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만약 직·간접적인 불이익이나 2차 가해를 경험했다면, 기존 업무와의 차이점이나 불이익 내용을 날짜, 시간, 참여자, 발언 내용과 함께 일기나 일지 형태로 기록하고 메신저 화면 등을 캡처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 사건 직후 작성한 일기, 동료·지인에게 보낸 SNS·문자 메시지, 병원 진료 기록(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처방 기록) 등은 법적·제도적 구제 절차에서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다.

*통화나 대화 시 자신의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는 당사자 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나 합의가 없더라도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제삼자 간의 대화는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외부 공론화하는 경우** : 피해자 등이 피해 내용을 블로그, SNS, 단체 대화방 등에 공개하는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법적 문제

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피해자가 외부 공론화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나 피해자 지원기관의 사전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언론 취재와 초상권 보호** : 언론사에서 취재가 생기는 경우 피해자는 이를 전면 거부할 권리가 있고, 동의 없는 촬영이나 인터뷰 시도가 있다면 보도 금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긴급 구제를 요청도 가능하다.

(2) 사건 해결 경로 지침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법적·조직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면,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래의 세 가지 해결 방법 중 피해자 등은 상황과 목적에 맞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지원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비공식적 방식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공식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 합의금(위자료) 지급,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며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는 전문가(성폭력 관련 전문가, 갈등 조

정 중재 전문가, 변호사 등)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 **요구 사항 서면 정리** : 가해자에게 요구할 사항(공식 사과문 작성, 특정 공간 출입 금지, 위자료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정리하고, 내용증명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가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 **대면·통화 시 주의 사항** :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할 경우, 가해자의 협박·회유·부인 등으로 인해 심각한 2차 충격에 다시 사로잡힐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직접 만남은 극도로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대면하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나 변호사를 동석시키고 대화 내용 전체를 기록하는 것이 좋다.

소속 집단 안의 해결 (조직 내 징계와 격리)

교회(지교회), 노회, 또는 총회 시스템 내의 관련 위원회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격리하는 방식이다.

- **공식 신고 접수** : 소속 교회 정관이나 총회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건을 접수한다.

- **사용자의 보호 의무 요구** 신고 접수 즉시 총회(노회)나 교회 대표자에게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공간 분리(근무지 변경), 가해자 직무 정지, 피해자 유급 휴가 제공 등의 임시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조사 모니터링** : 조사 과정에서 비밀 유지가 철저히 지켜지는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차 피해 발언이 없는지 등 조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조력자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가해자에 대한 면직·출교·정직 등 실효성 있는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제도를 통한 해결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거나 경제적 배상을 받게 할 수 있는 방식이다.

- **형사 고소** : 법률구조공단이나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 : 형사 처벌과 별개로, 성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충격, 치료비(정신과 진료비 등) 등에 대해 가해자나 기관장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적 진정(외부 공적 기관)** : 만약 교회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국가인권위원회(차별과 인권침해), 고용노동부(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보호조치 위반) 등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2. 주변인의 역할

(1) 성폭력 사건을 접했을 때 / 들었을 때

- ①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 ②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③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상담(신고)하는 예도 있으므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왜 지금 상담(혹은 신고)하는가를 묻지 않는다.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수치심과 모멸감, 분노, 자책 등의 감정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 중에서는 가해자가 자기에겐 행했

던 행동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상황을 현재에서 다시 경험하게 될 때 과거 자신의 피해 경험과 감정이 상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고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혹은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겠구나. 지금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말하지 않는다면 나도 가해자의 공범자가 되겠구나'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상담이나 신고를 결심하는 경우도 있다.

- ③ **성폭력 2차 피해** :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소속 교회, 시찰회, 노회, 학교, 교단, 사법과 의료기관 등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지인, 지원단체, 변호인 등에게 보이는 부정적 반응으로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유형** : 피해자에게 책임 씌우기, 피해자 신상 유포, 사건을 가십거리로 삼는 행위, 언어적인 폭력,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피해자나 지지자, 조력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피해자의 지지자나 조력자를 음해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가해자, 피해자와의 인간관계가 겹치는 경우 서로 좋아해서 생긴 일이라고 의심하는 악의적 소문,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화해를 중용하는 행위, 여성

신학이나 여성학을 공부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비난을 하는 경우도 2차 피해에 해당한다.

- 피해자 등과 행위자의 선부른 화해 중용과 사건 종결 시도
- 피해자 등에게 앞으로의 조치를 지정 또는 단일한 안을 제시하는 행위
- 피해자 등의 신상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사건의 내용을 언론 등과 인터뷰하고 보도하는 행위나 온라인 게시글을 방치하는 행위
- 피해자 등이 사건을 유발하였다는 논리의 유포
- 피해자 등의 과거 경력, 성격, 태도, 사생활 등을 문제 삼는 행위
-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진술, 출석 등을 요구하는 행위
-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행위자와의 관계를 이성 교제, 사랑 등으로 규정하여 유포하는 행위
- 교육, 저술 등 모든 범주에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 기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3. 동료와 교회공동체를 위한 지침

- **공동체적 책임 인식** : 공동체 내 성폭력 발생은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조직의 안전망과 문화를 재점검해야 하는 공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성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 **소문 차단과 중립성 유지** : 피해자·가해자 모두와 가까운 관계일수록 대처가 중요하다.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을 주변에 옮겨서는 안 되며, 진상조사 기구가 아닌 개인이 동시에 양측을 만나 중재를 시도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 사건 처리 기간 중 신고인과 피신고인에 대한 험담, 사생활 폭로, 신학적 사상 검증 등의 폄하 발언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 **가해자 옹호 금지** : 가해자와 평소 친밀했다는 이유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사역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며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행동을 미화하는 것은 명백한 2차 피해이다.
- **과도한 관심과 책임성 발언 자제** :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잦은 연락을 취하는 것은 상황을 반복 회상하게 만들어

극심한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특히 “왜 그때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 “네가 여지를 준 것 아니냐?”와 같은 질문은 전형적인 2차 피해이다.

• **성차별적 언행에 대한 제지** : 일상에서 성차별적이거나 성적 굴욕감을 주는 발언을 목격했을 때, 당황하여 즉시 제지하지 못했더라도 자책할 필요는 없다. 진지한 어조로 “지금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죠?”, “그 발언은 어떤 의미로 하신 건가요?”라고 질문하여 가해자 스스로 발언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부적절한 분위기를 끊어내야 한다. 이런 조치는 피해자에게 강력한 연대의 신호가 되기도 한다.

• **사실 중심의 참고인 진술** : 목격자나 참고인으로서 조사위원회나 사법기관의 진술 요청을 받으면, 개인적인 추측이나 평판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객관적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성실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 **실질적 조력과 치유 프로세스 지원** :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해올 경우 감정적 지지와 더불어 교회 내 고충처리절차, 관련 법령 등 필요한 정보를 함께 찾고 사법기관 동행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교회는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전문 상담, 치유 프로그램, 지지 그룹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일상과 사역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돌봐야 한다.

• **가해자의 교정과 정의로운 처리** : 교회는 사건을 온정주의로 은폐하지 말고 정의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동체 규칙과 법령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교정될 수 있도록 엄격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목회자(지도자)를 위한 지침

• **상시적인 외부 전문기관 네트워크 확보** :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총회 성폭력대책위, 성폭력 전문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둔다.

• **신속하고 단호한 지침 이행** : 교회 내 성폭력 대처 지침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지 즉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와 조치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조사를 지연하거나 은폐를 시도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2차 피해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 **즉각적인 공간 분리와 출석 권고** : 인지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부서, 셀, 목장, 소속 변경 등)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존재로 인해 위협을 느끼거나 원할 경우, 가해자에게 교회 사역 중단과 출석 휴식을 강제 조치하여 추가적인 위협으로부터 피해자와 교회 구성원을 보호해야 한다.
- **피해자 중심의 책임 요구** : 가해자에게 면피성 조기 사과를 종용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원하는 방식으로 가해자의 진정한 회개와 책임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참여가 필요하다.
- **외부 전문가 자문** : 사건에 대한 상담 또는 신고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전문기관 연계 또는 노회나 총회 성폭력대책위로 이관해야 한다.

5. 가해자(행위자)를 위한 지침

- **‘의도’보다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 : 성희롱·성폭력은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도(친밀감 표시, 농담, 애정 표현 등)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가 친근감의 표시로 한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었다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 **침묵은 동의가 아님을 유념** : 상대방이 두려움, 당황함, 조직 내 권력관계 등으로 인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결코 동의나 합의가 아니다. 성적자기결정권에 기반한 명확한 허락이 없었다면 모두 성적 침해행위이다.
- **시대적 기준에 맞춘 성인지 감수성 확립** : 과거에는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든다는 핑계로 통용되던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 평가는 현재 법적 처벌과 조직 내에서는 중징계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일상의 언어 습관과 인식과 통념을 바꾸어야 한다.

• **피해자 중심의 경청과 자의적 판단 금지** : 사건이 불거졌을 때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스스로 무죄라고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변명을 중단하고 가해행위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의 목소리와 입장을 최우선으로 경청해야 한다.

• **조기 사과와 역고소 금지** : 사건을 덮기 위해 서둘러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압박이 될 뿐 아니라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 자숙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조건 없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허위 주장을 하거나 피해자를 무고·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행위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 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조직 내 활동 중단과 법적 책임 수용** :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별개로, 피해자는 사법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형사·민사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 교회, 노회, 총회에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밝히고 모든 직분과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 **전문적 치료와 재발 방지 처방 수용** : 반복적으로 성적 일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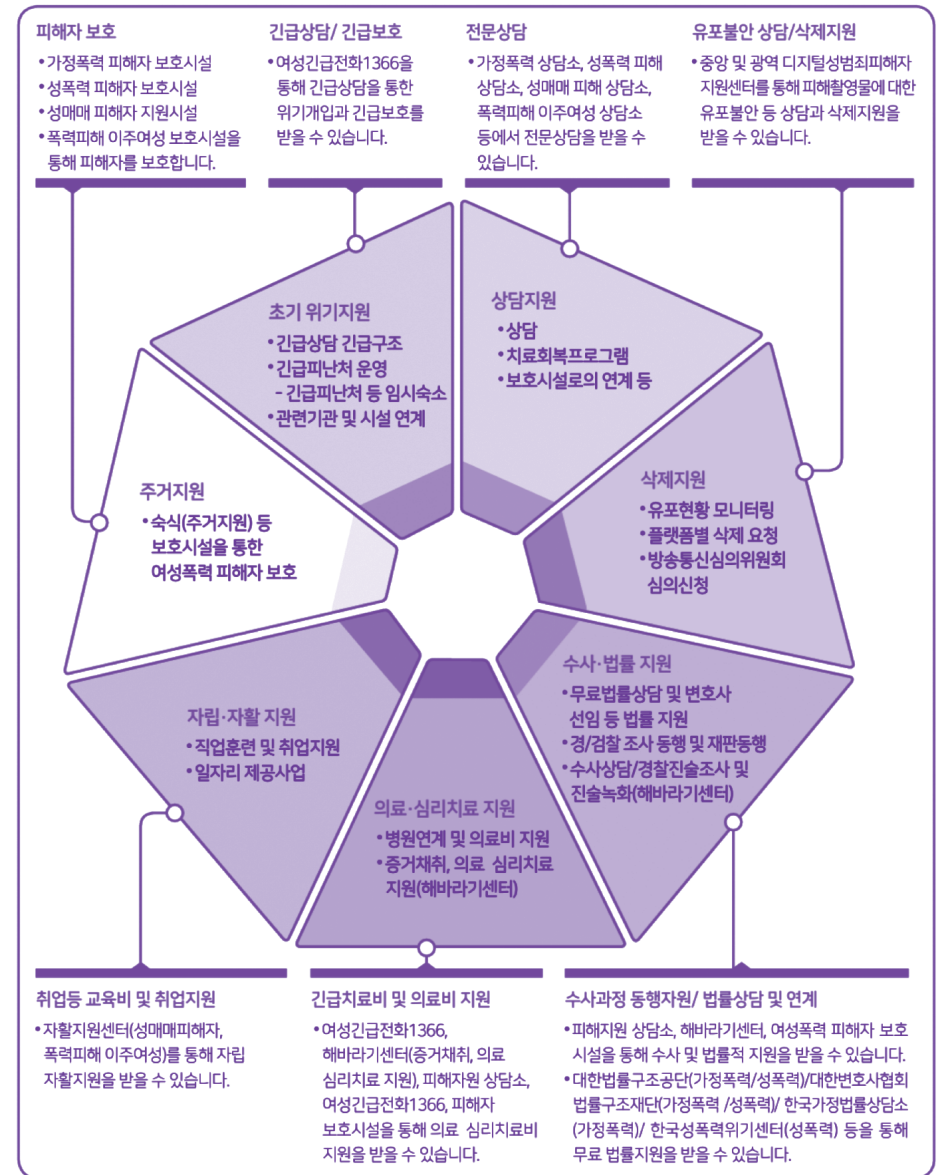
나 성폭력을 저지르는 경우,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독이거나 왜곡된 인지 구조 때문일 확률이 높다. 더 이상 재발 위험이 없도록 성폭력 전문 상담·치료 기관의 정기적인 상담을 받고 처방과 교육 프로세스에 참여해야 한다.

VII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

성폭력 피해자는 외부의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거지원, 긴급상담과 긴급보호를 통한 초기 위기지원, 전문상담을 통한 상담지원, 유포 불안 상담을 통한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취업 등 교육비 및 취업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지원, 긴급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한 의료·심리치료 지원, 수사과정 동행지원과 법률상담 및 연계를 통한 수사·법률 지원 등이 그 내용이다.

[출처 : 2024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부록

부록 1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단의 정책과 법안⁹

1. 전담 기구·전담 인력·신고 창구·예산

- 전담 기구 : 성폭력대책위원회. 총회 내 성폭력 신고와 전담 상담기구로 특별위원회. 1년마다 재승인
- 신고 창구 : 홈페이지 긴급 신고 운영

2. 정책·공적지침·매뉴얼

- 성폭력 예방과 처리지침서,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꿈꾸며'
- 목회자 성윤리 강령 선포

3. 징계 절차

- 성폭력대책위 : 사실확인 절차와 면담 진행. 최종 결론은 해당 노회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총회 위원회

9 출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 「교회 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교단 순회간담회 결과 보고회」, (2026)

사업 보고 때 총대들에게 공유. 위중한 사안일 경우 총회 재판국에서 다룸.

- 기독교반성폭력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자문위원과 상담원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 절차 진행

4. 성폭력 관련 헌법의 내용

- 피해자 개인신상 정보 보호(비밀 유지)
- 성범죄일 때 화해 권고 없음
- 성범죄 피해자를 대신할 수 있는 변호인과 대리인 선임 가능
- 성폭력 피해자는 재판 비용과 공탁금 면제
- 성범죄일 때 고소, 고발 등의 시한을 10년까지 연장
- 성범죄일 때 교회를 거치지 않고 노회에 혹은 노회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 직접 고소, 고발 가능
- 총회 재판국에 재판국 원으로 여성 1인 이상 참여(각 노회에 서는 이 조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추세임)
- 7년 이내에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을 목사 자격으로 두고 있음

5. 발생 현황 보고·후속 조치

- 발생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는 없고, 성폭력대책위원회

에서만 논의 후 후속 조치함

6. 서약서·가해자 이동 방지

- 성범죄 경력 자진 서약, 목회자 성윤리 강령 서약 : 2024년 성범죄가 없다는 ‘성범죄 확인 서약서’ 제출 의무화. 신학대학원 입학 시, 목사고시, 목사임직 시 필수서류(허위 제출 시 청빙 취소) → 노회 수의 절차 완료(2025)
- 2025년 목회자 성윤리 강령 준수 서약서 매년 제출

7. 강사 양성·교육자료 등

- 2020년 : 교회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영상자료 제작(청년회 전국연합회) 총회 양성평등위원회 주관으로 ‘성폭력 예방과 근절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 교육’
- 2023년 : 전국여교역자회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공동주관. 1기 한국기독교장로회 바이스텐더(성폭력 피해자 조력자) 양성 과정 진행
- 2024년 : 전국여교역자회 주관으로 여교역자 대상으로 제 1기 성인지감수성 전문 강사 양성 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강사로 파송(12명)
- 2025년 : 전국여교역자회 주관으로 여교역자 대상으로 제 2기 성인지감수성 전문 강사 양성 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강사로 파송(17명) 전국여교역자회 부설 여성세움센터 주최. 2기 한국기독교장로회 바이스텐더 양성 과정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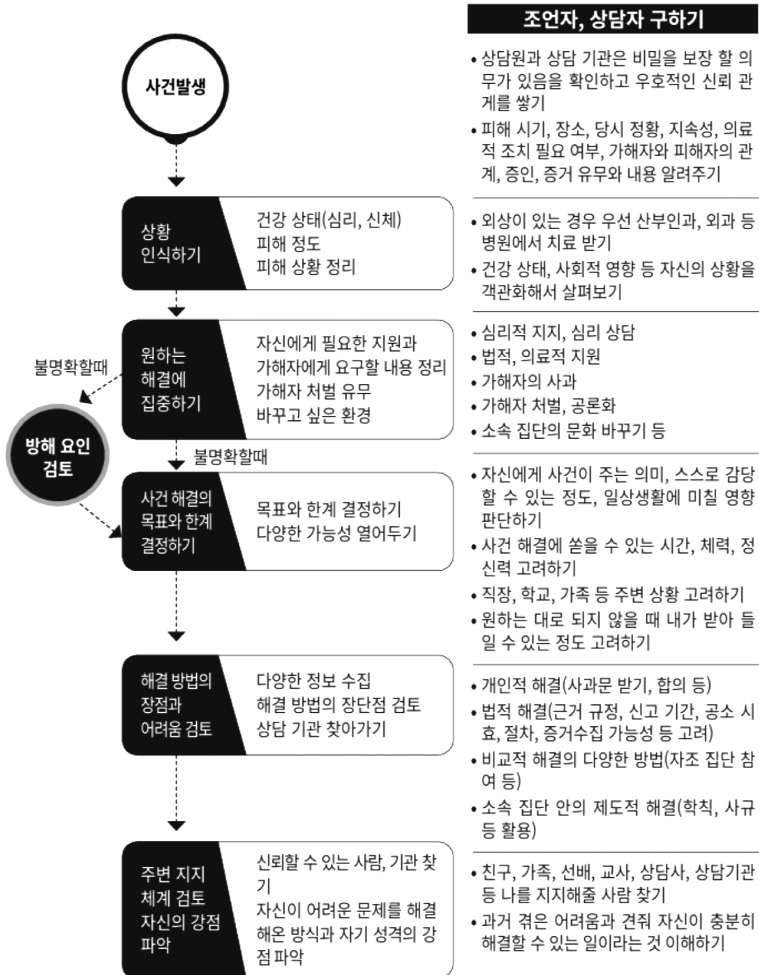
8. 예방 교육

- 신학생, 목사후보생, 전 노회 목회자와 장로 의무 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2021년 목사 수련생 수련 과정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
- 2025년 총회 대표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 참석
- 28개 노회 주관 성폭력 예방 교육 진행 후 총회 보고 : 상·하반기 성폭력 예방 교육 지도 점검 결과 가장 많은 참석 비율은 52% 가장 적은 비율은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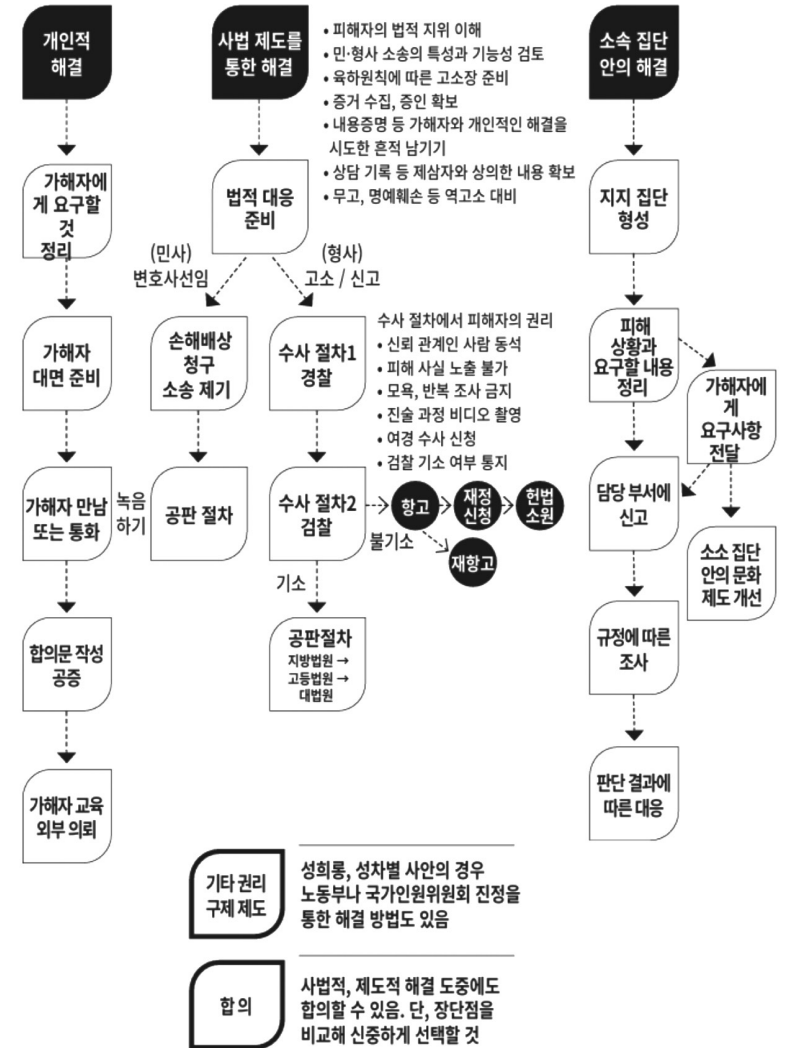
부록 2

사건 해결 지도 따라 길 찾기

사건 해결 지도 따라 길 찾기 : 1단계



사건 해결 지도 따라 길 찾기 : 2단계



출처 : [보통의 경험] 한국성폭력상담소(2011)

부록 3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10가지 수칙¹¹

1. 공동체의 은혜와 헌신은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은혜’와 ‘사명’이라는 말로 문제를 덮거나 침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2. 외모, 나이, 성별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존재로 서로를 대합니다. 사람을 외모나 나이, 성별로 평가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가 지닌 존엄함을 존중하며,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로 관계를 맺습니다.
3. 상대의 몸과 경계를 존중합니다. 격려나 친밀감을 표현할 때도 먼저 상대의 경계를 확인하고,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삼가야 합니다. 거절의 표현은 존중되어야 하며,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동의에서 시작됩니다.

11 출처 : 교회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내서, 기독교반성폭력센터(2025)

4. 개인적인 만남이나 연락은 서로의 자유와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연락을 강요하지 않으며, 특히 위계가 있는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히 행동합니다.
5. 사진 촬영과 공유는 동의와 허락을 먼저 구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은 상대의 동의 후에 촬영·공유하며, 친밀함을 이유로 권한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사생활은 사생활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6. 결혼, 연애, 성정체성, 가족사 등 민감한 이야기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묻거나 나누지 않습니다.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소문이나, ‘중보기도’를 위해서도 개인의 동의가 없다면 공유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7. 성별이나 나이에 따른 차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자니까’, ‘막내니까’라는 말 대신, 모든 역할을 평등과 존중의 시선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구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8. 위계나 직분에 따른 언어와 행동에 신중합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영향력도 커지는 만큼,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며, 말과 행동에서 공동체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9. 모든 공간에서 안전을 지향합니다. 예배와 사역의 자리뿐 아니라, 단체 채팅방과 비공식 모임에서도 성적 농담이나 부적절한 자료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10. 성희롱 예방과 대처는 모두의 책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대응 방법을 숙지하며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의 방식과 속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지지하고 행동합니다.

부록 4

피해자 지원 기관

1. 여성 긴급전화 1366 : 국번 없이 1366 또는 지역번호 + 1366
 - 24시간 365일, 전화 · 온라인 상담 가능
 - 성폭력 · 교제 폭력 · 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상담 후 서비스 연계
 -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cc/wcc/cc_wcc_f001.do
2. 해바라기센터 : 365일 24시간,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
 -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원스톱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
 - 1366으로 전화하면 지역과 상황에 맞는 해바라기 센터로 연계 받을 수 있음
 - 홈페이지: <https://www.sunflowercenter.or.kr/index.php>
3.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성범죄 포함) 지원
 - 1366으로 전화하면 지역과 상황에 맞는 해바라기 센터로 연계 받을 수 있음
 - 홈페이지: <https://d4u.stop.or.kr/ko/intro>

4. 교회 성희롱·성폭력 사건 상담과 지원

- 가장 성폭력대책위원회 : 상담 전화 02-3499-7606, 이메일 prok.hotline@prok.org
홈페이지: <https://prok.org/Page/Index/1615>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상담 전화 02-365-1994(평일 오전 10시 ~오후 5시) 이메일 talktome@youvoice.or.kr
홈페이지: <http://yourvoice.or.kr/>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 :
상담 전화 02-2266-8275(평일 오전 10시 ~오후 5시) 홈페이지 www.8275.org

5. 성폭력상담소 : 2026년 1월 기준 전국 191개소

-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정책자료 주제별정책자료 인권보호(263번 성폭력상담소 현황)참고
https://www.moge.go.kr/mp/pcd/mp_pcd_s001.do?mid=plc504
- 지역 내 성폭력상담소는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성폭력 상담) 02-338-5801, 홈페이지 sisters.or.kr
한국여성의전화(가정폭력, 교제 폭력 등) 02-3156-5400, 홈페이지 hotline.or.kr

참고 자료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교회성폭력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간담회」, 2026.
유튜브 간담회 1부 <https://youtu.be/Pk7TkkgP4ac?si=Tm1aNWur9k-CGp2We>
간담회 2부 <https://youtu.be/58wFWV28BcM?si=CTbsrU3E4c-13WWWhG>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 「교회성폭력 예방과 극복을 위한 교단순회간담회 결과 보고회」, 2026.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교회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내서」, 2025.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목회자 성범죄 경력조회(교회 내 성범죄 경력 조회의 필요와 실현방안에 대하여)」, 2024.
- 임정혁,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매뉴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 ‘젠더 감수성 교육’ 시 자료 3, 2019.
- 임정혁, 「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제별 대응 지침라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 ‘젠더 감수성 교육’ 시 자료 4, 2019.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교회 성폭력 예방 지침

서」, 2018.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교회 성폭력 대응 매뉴얼」, 기독교위드유센터, 2018.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감리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 2018.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뉴스앤조이 지음, 「미투 처치투 위드유 교회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지침북」, 2018.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양성평등위원회, 「생명다리 이어가기 - 성평등을 위한 교회 지침서」, 2015.

별지 1. 성폭력 사건 조사 신청서

성 명 (가명가능)			소속 교회		
신청자와의 관계	① 본인 ② 동료 ③ 보호자 () ④ 대리인 () ⑤ 기타 ()				
연 락 처	집	—	—	휴대폰	— —
주 소					
사건을 알게 된 경위 (피해 가해 당사자일 경우는 제외)					
사건 내용	① 누 가				
	② 연 제				
	③ 어디서				
	④ 무엇을 / 어떻게				
	⑤ 요청사안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정보					
기 타	(증거자료 있을 시 기재 등)				

별지 2. 성폭력 사건 접수 보고서

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노회/총회에 보고합니다.					
1	접수일자		2	보고일자	
3	피해 접수인	성명 (가명)	교회	직분	
4	행위자	성명	교회	직분	
5	사안 유형				
6	사건 내용 (간단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요청사안			
7	현재 상태 (신체, 심리, 정서)	피해 접수인			
		행위자			
8	기타				
9	담당자				서명

별지 3. 증인 확인서

1. 본 확인서는 교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2. 증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건 담당 위원만 확인할 것입니다. 3.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1	성명	소속 교회	직분	
2	사건 확인	누가 (관련자 모두 기입)		
		언제	① 첫 발생일 : 20____년 ____월 ____일 ____시경 ② _____개월 간 _____번 정도	
		어디서		
		무엇을 / 어떻게		
		왜		
3	증인(모두)			
4	기타			

별지 4. 성폭력대책위원회 협의록

협의 일시	년 월 일 (시작 시각 : - 종료 시각 :)	
참석 위원		
협의 주제		
협의 내용		
확인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 (서명·날인)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 (서명·날인) (서명·날인) (서명·날인) (서명·날인) (서명·날인)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 (서명·날인) (서명·날인) (서명·날인) (서명·날인) (서명·날인)

별지 5. 성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속한 우리는 모두 성 평등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성윤리 강령을 실천하기로 다짐합니다. 이 강령은 우리 교단 소속 목회자와 신도, 기관과 유관 기관의 모든 임원,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지키겠습니다.

1.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양하면서도 동등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하며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2. 우리는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을 차별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평등한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어가겠습니다.
3. 우리는 나이나 지위, 힘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피해를 주지 않고 성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는 칭찬이라도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며 수치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우리는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신속하게 상담을 연결하고, 비밀보장, 치료와 돌봄,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며 법적 대응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나 신체, 정신, 지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와 성폭력은 더욱 엄중히 다루겠습니다.

7. 우리는 성폭력 사건이 있는 교회공동체의 어려움을 살피고 잘 돌보겠습니다.

8. 우리는 성범죄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하고 회개하게 하여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9. 우리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학부, 신대원, 인턴쉽, 각 노회와 교회)

10. 이를 위해 우리는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하여 교회 성폭력 예방과 적절한 조치를 취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평등의 실현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온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이러한 은총으로 공동의 선을 이루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노회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위와 같이 성윤리 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이름 (사인)

성폭력 없는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제110회 총회 양성평등위원회는 지난 2019년 출판한 성평등 지침서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꿈꾸며」를 개정 증보하여 출판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성평등 지침서 개정·증보판을 발간하는 것은 성폭력 없는 정의롭고 안전하고 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우리 교단의 중요한 결단이자 책임의 표현입니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성폭력 예방과 처리 지침을 더 구체화하고, 각 교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 지침서가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 없는 정의롭고 안전하고 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발간사」 중에서